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4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김기현 · 이종배
이달희 · 김정재 · 성일종
박성훈 · 김상훈 · 구자근
최은석 · 권영진 · 이인선
김승수 · 유상범 · 정점식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거나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.

그런데,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으로 그 기한의 연장이 필요함.

이에 해당 특례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7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의3(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(이하 이 조에서 “개발제한구역”이라 한다)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.	제77조의3(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</u> <u>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1.·2. (생 략)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<u>2025년 12월 31일까</u> <u>지</u>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	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

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(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「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 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.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